

7. 대구광역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발의일자 : 2020년 9월 25일
- 발 의 자 : 이진련 의원, 강민구 의원, 김동식 의원, 김성태 의원,
김혜정 의원, 배지숙 의원
- 회부일자 : 2020년 9월 29일
- 상정일자 : 제278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
제1차 문화복지위원회(2020년 10월 12일) 원안 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이진련 의원)

□ 제안이유

- 본 조례안은 여성청소년의 복지향상과 건강한 성장 및 발달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“보건위생물품”, “여성청소년” 등의 용어를 정의(안 제2조)
-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과 방법 등을 규정(안 제3조)
-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조치 규정(안 제4조~제5조)

-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청, 구·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(안 제6조)
-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사무 위임에 대해 규정(안 제7조)

3. 검토보고 요지(보고자 : 전문위원 김창업)

□ 주요 검토사항

-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보건위생물품”, “여성청소년” 등의 용어를 규정하고,
- 안 제3조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대상과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음.
- 안 제4조에서는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에게는 중복지원을 할 수 없도록 하였고,
- 안 제5조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환수하도록 규정하였고,
- 안 제6조에서는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청, 구·군,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고,
- 안 제7조는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사무에 대해 구청장·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사무위임에 대해서는 구·군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.

□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에 근거하여 여성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- 2016년 생리대 제조사의 가격 인상 발표 후 수건이나 깔창으로 생리대를 대용하는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필요성이 대두되었고,
- 2017. 12. 12.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개정과 2018. 6. 5. 같은법 시행령 개정²⁸⁾으로 보건위생용품의 지원대상과 방법 등을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,
- 대구시에서도 국고보조사업으로 만11~18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755백만원(국50%, 시25%, 구25%)의 예산을 편성하여 보건위생물품 구매비용(월 11,000원)을 지원하고 있음.
- 여성의 월경에 대한 권리는 여성의 생명권, 행복권과 직결되며, 특히 청소년의 경우 건강권, 학습권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,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뿐만 아니라 여성청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필수품으로서의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에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짐.
- 다만 여성청소년 전체(84,026명 정도)를 대상으로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하게 될 경우, 약 116억원 정도의 시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, 서울시와 경기도, 광주시 등 관련 조례가 제정된 타시도의 경우에도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,

28) 지원대상 :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3조의2

①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
 ②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, 주거급여,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
 ③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, 주거급여,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
 ④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보건위생물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-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운 대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반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, 재정대책, 시행시기, 지원대상 및 사업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으며, 소관부서와 함께 구·군,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겠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	답 변
현재 보건위생물품이 지원되고 있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외에 청소년쉼터, 학교밖 청소년 등에게 우선적으로 지원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.	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지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.

5. 토론요지

- 없음.

6. 수정안 요지

- 없음.

7. 심사결과

- 원안 가결(재석의원 전원찬성)

8. 소수의견 요지

- 없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.